

광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5402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10. 27. 접수 제93939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이제승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목장용지 2897㎡
- 위 부동산의 의 지분 2897분의 579

-끝-

별지 2

청구원인

1. 구상권 발생경위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소외 B(업체명 : C)와 2021. 2. 3. 신용보증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2026. 2. 3.까지로, 위 보증기간 동안 신용보증원금 19,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2) 원고는 소외 B와 2021. 4. 14. 신용보증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2026. 4. 14.까지로, 위 보증기간 동안 신용보증원금 9,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제3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나. 신용보증서 발행

(1) 원고는 2021. 2. 3.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B가 소외 D은행 마석지점(이하 '소외 D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소상공인대출 20, 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26. 2. 3,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9,000,000원, 피보증인 C 대표자 B로 된 보증비율 95%의 개별보증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갑제2호증 신용보증서 참조】

(2) 원고는 2021. 4. 14.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B가 소외 F은행 마석지점(이하 '소외 F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자금대출 1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26. 4. 14, 보증번호 G, 보증금액 9,500,000원, 피보증인 C 대표자 B로 된 보증비율 95.0%의 개별보증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갑제4호증 신용보증서 참조】

다. 대위변제와 구상채권의 발생

소외 B는 2021. 11. 26. 이자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F은행은 2022. 1. 19.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외 B는 2022. 1. 20. 부실처리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갑제5호증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참조】

(1) 원고는 2022. 5. 4. '소외 D은행'에게 2021. 2. 3.자 보증번호 E에 의하여 19,119,316원 (= 원금 19,000,000원 + 이자 119,316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갑제6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2) 원고는 2022. 4. 20. '소외 F은행'에게 2021. 4. 14.자 보증번호 G에 의하여 9,629,452원 (= 원금 9,500,000원 + 이자 129,452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갑제7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B로부터 2022. 4. 20. G에 기하여 227,210원의 원금을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 49원이 발생하였고, 2022. 5. 4. E에 기하여 642,300원의 원금을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 140원이 발생하였으며, 2022. 9. 13. 기준 잔여대지급금은 208,749원입니다. 【갑제8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참조】

이로 인해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 28,088,196원 (= 구상원금 27,879,258원¹⁾ + 잔존 대지급금 208,749원 + 확정손해금 189원) 및 그중 18,477,016원에 대하여 2022. 5. 4.부터, 9,402,242원에 대하여는 2022.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27,879,258원 = 대위변제금 28,748,768원 - 회수원금 869,510원

라. 지연손해금 등 부채채무

소의 B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가)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보증료를 지급하고, (나) 원고가 피보증인인 소외 B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신용보증약정서 제8조에 의하여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여 그 이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행하여야 할 금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및 이행하여야 할 일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다)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외 B가 보증료를 납입한 보증기간 내에 보증책임이 해지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기간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규정의 요율에 의한 위약금, (라)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절차와 관련하여 해당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등 모든 부채채무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²⁾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의 2019. 4. 1. 이후의 요율은 연 8%입니다. 【갑제9호증 기간별손해금률변동표 참조】

마. 원고의 소외 H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및 확정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차전13059 구상금사건을 진행하였고, 소외 B의 이의부제기로 인해 위 지급명령결정은 2022. 8. 11. 확정되었습니다. 【갑제10호증 지급명령결정문 참조】

2. 사해행위취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 및 등기완료

2) 갑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상환범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구상금 채무자인 소외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B의 지분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니, 소외 B가 원고로부터 구상채무변제 촉구가 올 것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2021. 10. 25. 소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서 2021. 10. 27.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93939호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갑제1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대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2021. 10. 25.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미 위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소외 B는 2021. 11. 26. 이자연체를 이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22. 1. 19. 소외 F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함에 따라 2022. 1. 20. 부실처리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소외 B는 이 사건 사해행위 발생시점인 2021. 10. 25. 당시 이미 채정악화 상태였음을

넉넉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2. 4. 20, 2022. 5. 4.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B는 몇 달 전부터 재정악화에 시달린 것이 분명하고, 추후 원고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명백한 상황에서 보증사고가 나기 전에 소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필연적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생기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소외 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의 담당자가 2022. 6.경 피고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B에게 5년여 전에 3~5백만 원을 빌려주었고, 채무 탕감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채무자와는 모녀 사이는 아니라고 하였고, 소외 B와 연락하여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 제12호증 사실조회협조요청 참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는 기존 채무의 변제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을 대물변제 받았음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악의는 충분히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외 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이므로,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행위는 사해행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인바, 수익자인 피고는 그 악의가 추정되어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원상회복 청구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이루어진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B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인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그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원고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끝.

